

발행인 : 용산구청장
 편집인 : 홍보담당관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1701호 2014. 10. 17.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고시 제2014-113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
고시 제2014-114호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6

◎ 공 고

공고 제2014-740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고 제2014-741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공고 제2014-742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8
공고 제2014-744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공고 제2014-748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공고 제2014-749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용산구 홈페이지 <http://www.yongsan.go.kr>(용산소개→구청소식→용산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199-6700 / 전송 : (02)2199-5510
- 구보발행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

D-3 접수 →
 D-2 편집·교정 →
 D-1 인쇄·제책 →
 D 보급·배부

※ 문서시행일은 구보발행일자가 아닌 문서별 게재일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보 발 행 일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4 - 11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 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용 산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고시 대상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위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지적과(02-2199-6980)에 문의 또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보광동 265-656	우사단로4라길 16-50	2014.10.17	기존 미부여 무허가건물	2014.10.17	우사단로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4 - 114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용 산 구 청 장 (인)

대상시설(지역)			해제 사유	등급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명 (지역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용산동2가 1-1630 노후건물	용산동 2가 1-1630	변병환	① 정밀안전진단 결과 본 건물의 종합평가등급은 C등급에 해당 ② 건물의 기울기는 준공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지반이 거의 안정화되었고, 상세 외관조사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E→C급	○ 재난위험시설에서 제외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로 관리 ○ 반기별 점검 실시	-

공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용산구의 재활용활성화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자원난 시대에 올바른 재활용 문화 조성 및 재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자원순환을 선도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4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2199-7312, FAX 2199-5680, e-mail : ksy0325@yongsan.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10.
제 출 자 : 용산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제4조2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산구의 재활용 활성화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제4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 변경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마. 기타
 - 1) 입법예고 : 2014. 10월 중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2014. 10월중
 - 4) 성별영향평가 : 2014. 10월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14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4조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u>2019년 12월 31일</u>로 하되, ----- ----- ----- -----.</p>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4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부칙 제1051호에 의거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 연장(조례 제1051호 부칙 제2조)
-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세무1과장, 전화: 2199-6830, FAX: 2199-56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 년월일 : 2014. 11.
제 출 자 :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제1051호 부칙에 의거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칙 개정을 통한 적용시한 연장(조례 제1051호 부칙 제2조)
-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2) 입법예고 : 2014. 10. 15. ~ 2014. 11. 04. (20일간)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0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 을 “2017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칙<제1051호, 2014.04.18>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 및 제13조는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p>	<p>부칙<제1051호, 2014.04.18> 제2조(적용시한) 2017년 12월 31일까지</p>

《 관 계 법 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4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규정의 규제 성격적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반환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표준수수료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규정의 반환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변경(2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2199-6830, FAX : 2199-56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 년월일 : 2014. 11.
제 출 자 :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규정의 규제성격적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반환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표준수수료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 조례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수수료 반환규정의 반환범위 확대(안 제7조제2항)

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 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변경(2종)

1) 금액 변경 : 비료수입업 신고 등 2종(인상 2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39조(법률 제11399호, 2012. 3.21.개정)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개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관련부서 사전협의 : 협의완료(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마.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4. 10. 15. ~ 2014. 11. 04.(20일간)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2. 나목 중 (3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수수료액 “1,400” 을 “1,500” 으로 한다.

별표 2. 나목 중 (35)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액 “10,000” 을 “20,000”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예외로 한다.</p>	<p>제7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u>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u>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u>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u> 반환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별표</u>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td> </tr> <tr> <td>(3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1,400원</td> <td></td> </tr> <tr> <td>(35) 비료수입업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금액	비고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3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1건	1,400원		(3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p><u>별표</u>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종 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단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td> </tr> <tr> <td>(3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1,500원</td> <td></td> </tr> <tr> <td>(35) 비료수입업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right;">2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위	금액	비고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3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1건	1,500원		(3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종 목	단위	금액	비고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3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1건	1,400원																															
(3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원																															
종 목	단위	금액	비고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3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허가 또는 임대허가 신청	1건	1,500원																															
(3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2.9.22]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22]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부 칙 <제24111호, 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2월 22일까지는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각각 "승강기보수업"으로 본다.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 류	표 준 금 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낚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요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3.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중요생산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 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 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종 류	표 준 금 액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상환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가계안정과 사기진작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의2)

“2014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 변경

나. 대여 금액 및 대여한도(안 제8조)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 를 삭제

다. 상환기간 연장(안 제9조의2)

“3자녀 이상의 대여 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 연장” 신설

라.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안 제10조제2항)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 미복학자는 일시상환” 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1.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2199-7307, FAX 2199-5680, e-mail : maya92@yongsan.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4. 10.
제 출 자 : 용산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상환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가계안정과 사기진작 도모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의2)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

나. 대여 금액 및 대여한도(안 제8조)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를 삭제

다. 상환기간 연장(안 제9조의2)

“3자녀 이상의 대여 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 연장 “신설

라.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안 제10조제2항)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 미복학자는 일시상환”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14. 10월 중

마. 부패영향평가 : 2014. 10월 중

바. 성별영향평가 : 2014. 10월 중

사.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2014-7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내용 중 “2014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 내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을 ” 교육부 장관 “으로 한다.

제7조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대여회수” 를 “대여횟수” 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누계 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2항 내용 중 “입금액” 을 “입금(제세공과금 제외)”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환기간 연장)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 대로 상환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치기간 연장자 중 상환 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를 연장 우선순위로 둔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학교 중퇴자

2.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u>교육과학기술부장관</u> 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u>교육부 장관</u> 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4. (생략)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략) ② <u>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u>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누계 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u>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생략)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u>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u> 원천 공제한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u>입금(체세공과금 제외)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u> 원천 공제한다.
<신 설>	제9조의2(상환기간 연장) 3자녀 이상의 <u>대여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대로 상환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거치기간 연장자 중 상환 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를 연장 우선순위로 둔다.</u>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역을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역을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p>1. ~ 2. (생략)</p> <p>3. <u>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u></p> <p>4.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신설></p>	<p>②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치하여야 한다.</u></p> <p>1. <u>학교 중퇴자</u></p> <p>2. <u>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6기 구정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재해·재난 사전예방과, 복지수요 증가로 나눔복지 실현을 위한 안전 및 복지관련 조직을 추가·확대하고 그 밖에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 및 이관·삭제(안 제5조)
 - 교육지원과 → 인재양성과
 - “마을공동체·공유도시·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 “민방위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재난과로 이관

나.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 및 분장사무 추가(안 제6조)

- 지역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경제·일자리정보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신설 및 분장사무 추가(안 제7조)

- 지역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신설, 고용정책과 폐지
- “자활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라.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 및 신설(안 제8조)

- 도시개발과 → 재정비사업과, 건축과 → 건축디자인과, 환경과 → 맑은환경과, 도시디자인과 폐지

마. 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명칭변경·신설 및 분장사무 추가(안 제9조)

- 도시개발과 → 재정비사
- 안전재난과 신설,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안전치수과 → 치수과
- “민방위에 관한 사항” 안전재난과 분장사무 신설

바. 법제처 주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관련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2199-6320, FAX : 2199-5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12조” 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 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로,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구 본 청” 을 “구본청” 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의 행정사무” 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의 행정사무” 로, “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 을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 를 “인재양성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무·인사·직원 후생교육·국내외 자매도시 결연·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자치지원·마을공동체·공유도시·동주민센터내 자치회관·국민운동진흥에 관한 사항
3. 구정 종합기획·공약사항·예산·법제·송무·규제개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학사업·학교지원·평생교육·독서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지역경제과·세무1과·세무2과· 지적과” 를 “재무과·일자리경제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경제” 를 “지역경제·사회적경제·일자리정보”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용정책과” 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 및 노정” 을 “복지정책”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같은 항 제5호 및 제3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전의 제5호) 중 “노인·가정·여성·청소년복지·저출산대책”을 “노인·보육·가정·여성·청소년복지·저출산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지조사·관리 및 자활복지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를 “재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맑은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비·관리”를 “재건축·정비·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정비”를 “도시계획·정비·재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관리”를 “건축관리·도시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안전치수과”를 “안전재난과·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토목과·치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건설행정”을 “재난관리·생활안전 등 안전정책 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방위 관련 사항

제9조제2항제3호 중 “토목·치수·하수”를 “도로·하천재산·옥외광고물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방재,재난관리”를 “교통시설·주차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토목·하수·치수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제목 “직 속 기 관”을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13조과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

제12조 중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를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로, “식품”을 “축산물 위생관리, 동물보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로 한다.

별표 1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위치란 중 “이태원 34-87”를 “이태원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공유재산팀장"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용산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고용정책과장"을 "복지조사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재정비사업과장"으로 하고, "재개발전담업무담당 주사"를 "갈등조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광고물정비담당주사"를 "광고물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하고,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을 “교통행정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112조 부터 제120조 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제2장 구 본 칙	제2장 구 본 칙
제3조(국의 설치) <u>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u>	제3조(국의 설치) <u>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 라 한다)의 행정사무 -----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u> -----.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u>교육지원과</u> ,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 ----- <u>인재양성과</u> ----- -----.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u>1. 총무·인사·법제·송무·공무원단체에 관한사항</u>	<u>1. 총무·인사·직원 후생교육·국내외 자매도시 결연·공무원단체에 관한사항</u>
<u>2. 구행정기획·예산·제도정책발전·경영혁신 및 통계에 관한사항</u>	<u>2. 자치행정·자치지원·마을공동체·공유도시·동주민센터내 자치회관·국민운동진흥회에 관한 사항</u>
<신 설>	<u>3. 구정 종합기획·공약사항·예산·법제·송무·규제개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u>
<신 설>	<u>4. 장학사업·학교지원·평생교육·독서진흥에 관한 사항</u>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동주민센터내 주민자치센터·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삭제>
7. 교육기획·학교지원·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삭제>
8. (생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9. 삭제	9. 삭제
10. 민방위에 관한 사항	<삭제>
제6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정경제국에 재무과·지역경제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를 둔다.	제6조(재정경제국에 두는 과) ① 재무과·일자리경제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② 재정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사회적경제·일자리정보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년정책과를 둔다.	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복지조사과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1. 주민생활지원 및 노정에 관한 사항	1. 복지정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4. 복지조사·관리 및 자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생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5. 노인·가정·여성·청소년복지·저출산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보육·가정·여성·청소년복지·저출산대책-----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사회적기업 육성·자활복지·취업정보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를 둔다.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 재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과, 공 원녹지과, 맑은환경과-----.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주택건설 및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1. ----- 재건축·정비·관리-----
2. 도시계획·정비 및 재정비촉진·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정비·재생 ----- -----
3. 건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관리·도시디자인----
5. 도시디자인·광고물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4.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과) ① 안전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토목과·안전치수과를 둔다.	제9조(안전건설교통국에 두는과) ① ----- -----안전재난과·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주차관리 과·토목과·치수과-----.
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1. 재난관리·생활안전 등 안전정책 총괄·조정 -----

<p>2. <u>교통에 관한 사항</u></p>	<p>2. <u>민방위 관련 사항</u></p>												
<p>3. <u>토목·치수·하수에 관한 사항</u></p>	<p>3. <u>도로·하천재산·옥외광고물 관리</u>----</p>												
<p>4. <u>방재,재난관리에 관한 사항</u></p>	<p>4. <u>교통시설·주차관리 등</u>----</p>												
<p>5. <u>안전정책 총괄·조정</u></p>	<p><u>5. 토목·하수·치수에 관한 사항</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직 속 기 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직 속 기 관</p>												
<p>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13조과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둔다.</p>	<p>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13조과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둔다.</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2. <u>도시계획·정비 및 재정비촉진·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p>	<p>2. <u>도시계획·정비·재생</u>----- -----</p>												
<p>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무, 구청장이 위임한 사무를 관장한다.</p>	<p>제12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 -----<u>축산물 위생관리, 동물보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u>-----.</p>												
<p>[별표1]</p> <p>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217 1362 705 1503">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td> <td>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 34-87)</td> <td>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 34-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p>[별표1]</p> <p>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752 1362 1240 1503"> <thead> <tr> <th>명 칭</th> <th>위 치</th> <th>관할구역</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td> <td>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td> <td>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 34-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4 - 74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6기 구정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안전확보와 복지관련 조직의 추가·확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편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부서명 변경·신설 및 폐지(안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1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9조제5항) - 교육지원과 → 인재양성과
- 교육지원과 → 인재양성과, 지역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 여성가족과
- 도시개발과 → 재정비사업과, 건축과 → 건축디자인과
- 환경과 → 맑은환경과, 교통지도과 → 주차관리과
- 안전치수과 → 치수과, 보건지도과 → 건강증진과
- “복지조사과” 및 안전재난과 신설, “고용정책과” 및 “도시디자인과” 폐지,

나. 업무 소관부서 조정(안 제6조)- 교육지원과 → 인재양성과, 지역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 사회복무요원 관리 : 총무과 → (신설) 안전재난과
- 법제 · 소송업무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민방위 관련 업무 : 자치행정과 → (신설) 안전재난과
- 도서관 관련 업무 통합 : (신설) 인재양성과
 - 자치행정과 : 마을문고, 북카페 등
 - 문화체육과 : 구립도서관, 시립작은도서관
 - 교육지원과 : 어린이영어도서관
- 주택재건축 업무 : 건축과 → 주택과
- 주택재개발 업무 : 주택과 → (신설) 재개발사업과
- 도시디자인 업무 : 도시디자인과 → (신설) 건축디자인과
- 광고물 관리 · 정비 업무 : 도시디자인과 → 건설관리과
- 주차장 및 주차시설 설치 업무 : 교통행정과 → (신설) 주차관리과

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폐지업무 삭제 등

라. 법제처 주관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관련 사항 정비

3. 의견제출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 2199-6320, FAX : 2199-5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 를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로, “담당관·와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의” 로, “규정함” 을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제2조 중 “소속직원” 을 “소속 직원”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구 본 청” 을 “구본청”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5급 상당으로보한다” 를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10. 구보 발간

제3조의2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관한 홍보운영

13. 대변인 기능 및 연설문 작성

16.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7.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8. 인터넷방송 IP-TV 운영 및 관리

19. 청사 전광판 운영 및 관리

20. 기타 구정홍보 및 공보에 관련되는 사항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구 본 청”을 “구본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 5급 상당으로보한다”를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10. 구보 발간

제3조의2제2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관한 홍보운영

13. 대변인 기능 및 연설문 작성

16.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7.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8. 인터넷방송 IP-TV 운영 및 관리

19. 청사 전광판 운영 및 관리

20. 기타 구정홍보 및 공보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 중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양성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8호 및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9호 중 “행정관리국내”를 “행정지원국내”로 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

제6조제4호 중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사무 지도감독

8.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기부심사위원회 운영)

9.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항

제6조제11호 중 “행정사”를 “행정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20호 중 “위·해축 및 육성관리·지도·자녀장학금”을 “육성관리·지도·자녀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8호 중 “국민계도(거리질서 계도)”를 “국민계도”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공유사업 총괄

제7조제3호 중 “평가” 를 “평가(성과관리 포함)”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통령공약사항” 을 “공약사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구정혁신 및 경영” 을 “구정혁신”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1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2.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23. 훈령 · 고시 · 공고 및 예규의 심사
24. 자치법규의 편찬 및 발간
2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26.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27. 규제개혁 추진 총괄

제8조의 제목 “(교육지원과)” 를 “(인재양성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 을 “인재양성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새마을 문고 설립인가, 운영지도 및 제반업무
15. 새마을 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리
16. 지역정보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한다.

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호(중전의 제4호) 중 “우편물 수발” 을 “민원안내 및 상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제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호(중전의 제3호) 중 “행정자료실 운영” 을 “구·동 민원업무의 개선·지도” 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제12호로 한다.

제9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디서나 민원증명 및 민원24 교부에 관한 사항

제9조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7호로 한다.

제9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외국인 인감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2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6호를 제2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제24호로 한다.

제9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인구동계에 관한 사항

제9조제31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를 제3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를 제2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3호를 제25호로 한다.

제9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결격사유조회·회보에 관한 사항

제9조제32호를 제3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를 제32호로 한다.

제9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여권발급 수수료 관리

제12조 중 “재무과장·지역경제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을 “재무과장·일자리경제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3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

10.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11.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12. 희망근로에 관한 사항

13.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14.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센터 운영

16.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17.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18. 실업자대책에 관한 사항
19.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고용인력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 발굴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21.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22. 지역일자리공시제 업무
23.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총괄
24. 전기 공사업체 및 전기시설물 지도감독
25. 전기용품 단속 및 제조업체 사후관리
26. 농업증산 및 장려계획
27. 답작·전작 및 특수작물생산의 지도
28. 비료 및 농약업무
29. 양정, 수산업무
30. 농지관련업무
31.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32. 방문판매업 신고 및 행정처분
33.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 업무
34.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
35. 관리대상 품목 요금실태 조사
36.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37. 가격표시 대상업소 증명 발급
38. 소비자 보호
39. 대부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 중 “세입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을 “세입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납(현년도,과년도)”을 “체납(현년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과 소관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차량등록분), 레저세의 부과·징수및 체납정리

제16조제3호 중 “과내 현년도·과년도 체납총괄”을 “지방세 과년도 체납정리”로 한다.

제17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적 재조사 업무

제18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조사과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종합계획 수립·조정
3. 복지욕구 조사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5.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관리
6. 사회복지법인 관리
7. 재해구호(이재민 구호, 응급구호비 지급 등)
8. 무연고 사망자 행정 처리
9. 구민휴양소 건립 및 운영
10. 사회복지직 관리 및 교육·워크숍 추진
11. 복지재단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3.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14.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 체계 구축
15. 복지위원 관리
16. 이웃돕기 후원 결연
17. 긴급복지 지원

제19조제18호 중 “복지위원”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민·관, 민·민 협의체 운영
20.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마우처 등)발굴 및 추진
21. 용산 푸드뱅크(마켓) 관리
22.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간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3. 적십자사 연계업무 추진
24. 통합사례관리사업
25. 129콜센터 연계 상담
26.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 활동사업 추진
27. 위기가정 발굴사업
28. 자원봉사 계획 수립
29. 자원봉사 활동 개발·운영
30. 자원봉사 단체 지원
31. 자원봉사 센터 관리
32. 주민생활지원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제24호의1을 제24호의2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가정복지과)” 를 “(여성가족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복지과장” 을 “여성가족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육료” 를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다문화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5.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저출산대책 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타 위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업무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운영매뉴얼(행정자치부)에 준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복지조사과) 복지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3.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4.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5.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6. 자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
8. 신규 신청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 생활실태 조사
9. 신규 신청대상자 이의신청 처리
10. 신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조사대상 접수 확인
11. 신규 신청대상자 공적자료 요청 및 근로능력 판정 의뢰
12. 신규 신청대상자 조사결과 적합 여부 통보
13. 신규 복지조사 관련 자료 제작 등
14. 복지사업별 급여의 적정성 관리
15. 복지사업별 연간 확인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16.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관리
17.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관련조사
18. 복지대상자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관리
19. 복지대상자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관리
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후관리 및 지원

제2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통문화 발굴 및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인쇄사, 정기간행물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6.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 등록에 관한 사항
7. 관광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22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를 제13호로 한다.

제22조제1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등록 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 등록·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문화, 종교,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제23조제19호 중 “유류불출”을 “유류수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운영

제25조 중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도시개발과장·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을 “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재정비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공관리제도 운용의 수합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제27조제4호 중 “도시재개발사업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상세계획” 을 “지구단위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심재개발” 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제27조제11호 중 “도심재개발” 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도심개개발” 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 중 “도심재개발” 을 각각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관리(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 를 “관리(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의 제목 “(도시개발과)” 를 “(재정비사업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개발과장” 을 “재정비사업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제3호 중 “총괄 사업관리자 협약업무” 를 “재정비촉진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행위, 철거명실신고, 위반건축물 관리
5. 재정비촉진지구 위험 시설물관리

제27조의2제6호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을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관한 사항
9.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 관련 사항(주택재개발)
11.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건축행위, 철거명실신고, 위반건축물 관리
12.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위험 시설물 관리
1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5.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사관계자 지도 감독 및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 행위제한 등 관련업무
17.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8. 개발사업 관련 갈등 사전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28조의 제목 “(건축과)” 를 “(건축디자인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과장” 을 “건축디자인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전단 중 “공동주택” 을 “공동주택(민영)”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도시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수변, 특정관리, 야간조명등) 수립
15. 도시경관디자인 위원회 운영
16. 용산구 상징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관리
17.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추진 업무
18. 가로 경관 및 환경개선관련 사업 업무
19.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업무
20. 기타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2의 제목 “(환경과)” 를 “(맑은환경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과장” 을 “맑은환경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감염성폐기물” 을 “의료폐기물” 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중 “정밀검사 기관 지정 및” 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및 제3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7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7. 연료수급조절·업무
38. 연료판매소·등록(신고)·및·지도감독
39. 연료의·품질관리·및·연료사용·위해방지
40. 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지도(에너지·절약·추진)
41. 연료사용·실태조사
42. 연료·현대화·및·연료전환·지도
43. 가스안전관리업무·및·가스수급조절·업무
44. 가스제조,·저장,·판매업·허가·및·지도감독
45. 가스사용시설·신고·및·지도감독
46. 도시가스보급·추진·업무

제30조의2제47호 중 “·가스용품,·용기” 를 “가스용품,·용기” 로 하고, 같은 조 제49호 중 “탄소마일리지” 를 “탄소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0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 특정관리대상시설 지도 감독
51. 에너지효율화사업에 관한 사항
52. LED보급 및 에너지클리닉서비스에 관한 사항
53.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 중 “건설관리과장 · 교통행정과장 · 교통지도과장” 을 “안전재난과장 · 건설관리과장 · 교통행정과장 · 주차관리과장” 으로, “안전치수과장” 을 “치수과장” 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한 검토 · 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및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 동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관리 및 대처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10. 재난 응급 조치 및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난 피해 원인 및 피해 상황 조사 · 분석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난의 수습 · 복구 · 지원 및 개선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4.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16. 공공시설물, 지하도, 지하철등의 지하시설물, 궤도, 삭도및유희시설물, 유선, 도선업 무안전지도
17.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18. 지역협력자생단체 지원(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의용소방대)
19. 안전문화운동(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취약계층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등)
20.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21. 안전정책 총괄 · 조정
22. 안전수준 진단 · 분석
23. 안전지수, 안전지도
24. 민방위 · 민방공계획의 총괄 수립시행
25. 전시민방위계획 수립
26. 민방위대의조직 · 편성 · 운영 · 동원및지도감독

27. 민방위 과태료 부과
 28.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응급조치 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29. 민방위사태 피해처리
 30.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31.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및 대원명부작성관리
 32. 민방위사태하의 주민의 통제 및 소산 수송통제
 33.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연구발전
 34. 민방위, 화생방 관련시설, 장비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35.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3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 등 수급계획수립·조정 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자원 및 예산총괄, 일체조사에 관한 사항
 37. 구 민방위협의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8.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9. 등화 및 경보시설 통제
 40.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1. 대피시설 계획 및 유지관리, 일체조사에 관한 사항
 42.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43. 안전건설교통국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제3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16.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17. 옥외광고물 안전도 관련업무
 18. 옥외광고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
 19. 벽보·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업체 관리
 20.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에 관한 업무
 21.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업무
 22.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3조제28호, 제29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4호부터 제49호까지를 각각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2호를 제4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3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제34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한다.
- 제33조에 제33호 및 제51호부터 제6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한 사항.
 51. 노상 방치차량 조사

52. 장기 미반환 차량관리
53. 택시운전자격정지 및 해제
54.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55.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56. 유상운송허가
57. 알선운송업체 지도단속
58. 교통불편 신고민원처리
59.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60.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61.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62. 체납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3. 각종 고지서 송달

제34조의 제목 “(교통지도과)” 를 “(주차관리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지도과장” 을 “주차관리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제34조제5호, 제8호, 제12호, 제14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7호 중 “과태료·운수과징금” 을 “과태료”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29.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자료 조사

제36조의 제목 “(안전치수과)” 를 “(치수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치수과장” 을 “치수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배기시설” 을 “기전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제17호 및 제19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보건지도과” 를 “건강증진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지도과장” 을 “건강증진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염병예방과” 를 “감염병예방과” 로, “과의과장(科長)에는 의사인 지방계약직” 을 “과의과장(科長)에는 의사인 지방일반임기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소 이용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제39조제4항제20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보건소내 다른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1.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22. 동물 보호관리(유해조수 제외)

23.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제3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지도과장” 을 “건강증진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실” 을 “교실,모유수유클리닉”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난임부부, 청소년 산모 등)

제39조제5항제18호 중 “전염병예방법” 을 “감염병예방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전염병관리” 를 “감염병관리” 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신종전염병” 을 “신종감염병”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전염병예방과(결핵등)” 를 “감염병예방과(결핵등)”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3호 중 “진료과목(1차진료과, 구강보건과)” 을 “진료과목(1차진료과, 구강보건과, 한방진료과)”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무에 관한 사항

제41조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문서의 접수·발송·문서관리(보존, 확인), 비밀문서 수발, 보관관리, 공인관리

나. 당직 및 비상근무, 청사 시설물 관리, 동 특수시책 추진, 법령집 관리

제41조에 제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구정에 관한 사항

가. 통·반장 위·해촉, 통·반 위치 및 구역조정 건의, 통·반장 수당지급

나. 통·반장회의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반상회 운영

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민상 등 주민상훈 추천

라. 동정보고회, 동민의 날 행사

마.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바. 적십자회비 모금

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 및 자금 배정요구

나. 일상경비 출납,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일상경비 집행 결산

4. 인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소속직원의 보직인사, 근무성적평정, 복무관리, 상훈대상 추천

나. 행정감사자료 작성, 감사 지적사항 처리

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동장소관)

5. 세무에 관한 사항

가.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나.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분)
-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물품관리, 청사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
-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 나. 주민등록(정정·말소 등) 신고, 이의신청
 - 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전입신고 수리, 국외이주신고 수리
 - 마. 주민등록 직권조치,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 바. 회수·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 사. 정정사항 통보, 과태료 부과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아. 주민등록 오류변호 정정
 - 자. 주민등록 번호부여, 등록기준지·주민등록지 통보사항 정리, 분실신고서 접수사항 통보
 - 차. 신고에 의한 말소
 - 카. 전입신고사항 사후관리
- 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 가. 출생·사망 신고 수리
 - 나.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고지, 신고서류의 구청 송부
 - 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 증명서 발급
- 9.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 가. 인감(변경·개인)신고수리,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인감 직권취소 및 부활
 - 나. 거주지 이동신고자에 대한 인감대장 송부, 인감대장 비치관리
- 10. 민원 및 학무에 관한 사항
 - 가. 확정일자 증명,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적용
 - 나. 행정정보 공개,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 다. 어디서나민원 처리, 우편민원 처리, 재택전자민원 신청접수
- 11. 민방위에 관한 사항
 -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 나. 민방위 교육훈련유예 면제 신청, 민방위대 동원유예 신청
 - 다. 현지교육훈련 신청, 방위대원 거주지 이동신고 수리
 - 라. 동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 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 바. 민방위 경보망 유지관리, 민방위대 편성
- 사. 민방위대 심사제외, 민방위대 동원
- 아. 민방위 교육훈련, 통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 자. 교육훈련 통지
- 12. 인력동원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 나. 비상대비 훈련통지 보고, 자격면허 관리,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 다.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 라.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
- 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에 관한 사항
 -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접수
 - 나. 정부양곡 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
 - 다. 복지대상자 방문복지 및 모니터링 실시
 - 라.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상담 및 중점관리 의뢰
 -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
 - 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봉사활동 지원
 - 사. 위기가정 및 복지사가지대 일체조사
- 14.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 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 나. 자산형성사업 신규신청 접수
 - 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 라. 생업자금 융자 신청 접수
- 15.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 가.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접수
 - 나. 의료급여증 재신청 및 배부
- 1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가. 기초연금신청 조기상담 및 접수
 -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재가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 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및 접수
 - 라.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 마. 시니어패스카드 발급 및 관리
- 17.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 가. 장애인등록 상담 및 접수, 위탁심사의뢰
 - 나. 등록 장애인 관리(관리카드, 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 다.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
- 라. 장애인 복지카드 접수 및 교부
- 마.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접수 및 교부
- 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 사. 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 아. 장애인 관련 각종 연금, 수당 초기상담 및 접수
- 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차.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 카.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전세자금 융자신청 접수
- 타. 장애인바우처사업, 활동지원사업 신청 접수
- 18.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 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변동 확인
 - 나. 아동급식 수요조사 및 대상자 관리
 - 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접수 및 증 교부
 - 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마.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신청 접수
 - 바.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 사.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접수
 - 아.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19.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 가.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
 - 나.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신청 접수
- 20. 기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 21.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가.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신청 접수
 - 나. 저소득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다. 집수리 신청 접수
- 22. 청소에 관한 사항
 - 가. 클린자원봉사대 운영
 - 나.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라. 저소득 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 23. 농지에 관한 사항
 - 가. 농지원부 등본 열람·교부, 농지원부 작성 비치, 거주지 이전 농지원부 송부

2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접수
 나. 승용차요일제 신청 처리
25. 건설행정 및 수도에 관한 사항
 가. 가구분할 적용신고
26. 한시적 추진 사무(관계법령 개정시까지)
 가. 선거공보 발송, 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27. 기타 동장 자율추진 사무(임의사무)
 가. 국경일 국기계양 계도, 동정보고회, 자율방법대 운영
 나. 구 체육대회 출전, 국민운동단체 관리, 동 체육회 운영
 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새마을협의회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라. 체육행사 개최, 경로위안 행사, 부녀자원봉사회 운영
 마. 양수기 보관관리, 재해·재난상황실 운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용산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규칙·정책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중 “총무과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 를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 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중 “총무과장” 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회법제업무담당주사” 를 “규제개혁업무 담당주사” 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역경제과장” 을 “일자리경제과장” 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 을 “일자리경제과장” 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축과장” 을 “건축디자인과장” 으로 하고, “안전치수과장” 을 “치수과장” 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건축과장” 을 “건축디자인과장” 으로 하고, 같은 호다목 “교통지도과장” 을 “주차관리과장” 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 을 “건설관리과장” 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 을 “주차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 를 “주차관리과”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 본청의 국장·과장·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와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의----- ----- 규정하는 것----- -----.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은 부구청장·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직무) ----- ----- 소속 직원 ----- -----.
제2장 구 본 청	제2장 구 본 청
제3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5급 상당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① ----- ----- -----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으로 보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홍보담당관) ① (생략)	제3조의2(홍보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한다.	②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u>구보 발간 및 모니터 운영</u>	<삭 제>
<신 설>	9. <u>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u>
<신 설>	11. <u>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관한 홍보운영</u>

9. (생 략)	12. (현행 제9호와 같음)
10. 대변인 기능	10. 구보 발간
11. (생 략)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 략)	15.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인터넷 주민여론조사	13. 대변인 기능 및 연설문 작성
14. 인터넷활용 홍보기법 개발추진	<삭 제>
15. (생 략)	8.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 연설문 작성, 홈페이지 활성화	16.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7. 영상물 제작 및 관리, 홈페이지 재구성 및 운영	17.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8. 기타 구정홍보 및 공보에 관련되는 사항.	18. 인터넷방송 IP-TV 운영 및 관리
<신 설>	19. 청사 전광판 운영 및 관리
<신 설>	20. 기타 구정홍보 및 공보에 관련되는 사항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 자치행정과장 · 기획예산과장 · 교육지원과장 · 민원여권과장 · 전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행정지원국)..... 인재양성과장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총무과)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공익근무요원 관리	<삭 제>
19. ~ 22. (생 략)	19. ~ 22. (현행과 같음)
23.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삭 제>

24.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삭 제>
25. 훈령 · 고시 · 공고 및 예규의 심사	<삭 제>
26. 자치법규의 편찬 및 발간	<삭 제>
2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삭 제>
28.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삭 제>
29. <u>청내 다른 국, 행정관리국내 다른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29.행정지원국내.....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자치행정과)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2.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u> 의 업무지원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지도감독	5.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 사무 지도감독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기부금품 모집	8.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기부심사위원회 운영)
9. <u>적십자회 지원(회비모금)</u>	9. <u>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항</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u>행정사 신고 및 지도감독</u>	11. <u>행정사업무</u> -----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14.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지도감독	14.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20. 새마을 지도자 위·해촉 및 육성관리·지도·자녀 장학금 지원	20.-----육성관리·지도·자녀장학금 -----
21. 새마을 문고 설립인가, 운영지도 및 제반업무	<삭 제>
22. 새마을 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리	<삭 제>
23. 환경정비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2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제반사항	<삭 제>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27.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제반업무	<삭 제>
28. 질서의식 선진화를 위한 국민계도(거리질서 계도)	28-----국민계도
29. 소비절약에 관한 제반업무.	<삭 제>
30.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31. 민방위·민방공계획의 총괄 수립시행	<삭 제>
32. 전시운영계획 수립 6.·7. (생 략)	<삭 제>
33. 민방위대의 조직·편성·운영·동원 및 지도감독	<삭 제>
34. 민방위 과태료 부과	<삭 제>
35.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응급조치 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삭 제>
36. 민방위사태 피해처리	<삭 제>
37.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삭 제>

38.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및 대원명부작성관리	<삭 제>
39. 민방위사태하의 주민의 통제 및 소산 수송통제	<삭 제>
40.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연구발전	<삭 제>
41. 민방위, 화생방 관련시설, 장비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삭 제>
42.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삭 제>
4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 등 수급계획수립·조정 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자원 및 예산총괄, 일제 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44. 구 민방위협의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삭 제>나
45.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6. 등화 및 음향관계 통제	<삭 제>
<신 설>	47. 공유사업 총괄
제7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기획예산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구 시책과 기획수행의 심사분석 및 평가	3.----- ----- 평가(성과관리 포함)
4. 대통령공약사항 추진 총괄	4. 공약사항-----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14. 구정혁신 및 경영에 관한 사항	14. 구정혁신 -----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20. 선진사례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삭 제>
<신 설>	21.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신 설>	22. 법령 및 자치법규의 심사
<신 설>	23. 훈령·고시·공고 및 예규의 심사
<신 설>	24. 자치법규의 편찬 및 발간
<신 설>	2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신 설>	26.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신 설>	27. 규제개혁 추진 총괄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새마을 문고 설립인가, 운영지도 및 제반업무
<신 설>	15. 새마을 문고 및 이동도서관 관리
<신 설>	16. 지역정보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민원어권과) 민원어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민원어권과).....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3.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구·동 민원업무의 개선·지도-----
4. 우편물 수발에 관한 사항	6. 민원안내 및 상담 ----
5.·6. (생략)	7.·8.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7. (생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8. 어디서나 민원증명 및 G4C민원 교부에 관한 사항	<삭제>
<신설>	10. 어디서나 민원증명 및 민원24 교부에 관한 사항
9. (생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생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생략)	13.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생략)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13. 인감증명 발급 및 외국인 인감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신설>	15.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외국인 인감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생략)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15. (생략)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16. ~ 18. (생략)	18. ~ 20.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19. (생략)	21. (현행 제19호와 같음)
20.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삭제>

<u>21. 신원조회·회보에 관한 사항</u>	<삭 제>
<신 설>	<u>22. 인구동계에 관한 사항</u>
<신 설>	<u>23. 결격사유조회·회보에 관한 사항</u>
<u>22. (생 략)</u>	<u>24. (현행 제22호와 같음)</u>
<u>23. (생 략)</u>	<u>25. (현행 제23호와 같음)</u>
<u>24. ~ 26. (생 략)</u>	<u>26. ~ 28. (현행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u>
<u>27. (생 략)</u>	<u>29. (현행 제27호와 같음)</u>
<u>28. 영수필증 관리</u>	<삭 제>
<신 설>	<u>30. 여권발급 수수료 관리</u>
<u>29. (생 략)</u>	<u>31. (현행 제29호와 같음)</u>
<u>30. (생 략)</u>	<u>32. (현행 제30호와 같음)</u>
<u>31.·32. (생 략)</u>	<u>33.·34. (현행 제31호 및 제32호와 같음)</u>
제12조(재정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u>재무과장·지역경제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u>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u>지적과장</u> 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재정경제국) ----- ----- <u>재무과장·일자리경제과장·세무1과장·세무2과장</u> ----- -----
제14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일자리경제과) <u>일자리경제과장</u>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u>9.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u>

<신 설>	9.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
<신 설>	10.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12. 희망근로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총괄
<신 설>	14. 노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전기 공사업체 및 전기시설물 지도감독	15. 일자리센터 운영
16. 전기용품 단속 및 제조업체 사후관리	16.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17.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신 설>	18. 실업자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9.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고용인력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마을기업 발굴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신 설>	21. 협동조합 업무에 관한 사항
23. 농업증산 및 장려계획	23.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총괄
24. 답작·전작 및 특수작물생산의 지도	24. 전기 공사업체 및 전기시설물 지도감독
25. 비료 및 농약업무	25. 전기용품 단속 및 제조업체 사후관리

30.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30. 농지관련업무
31. 방문판매업 신고 및 행정처분	31.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32.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 업무	32. 방문판매업 신고 및 행정처분
33.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	33. 가격표시제 및 공정거래 업무
34. 관리대상 품목 요금실태 조사	34.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단속
35.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35. 관리대상 품목 요금실태 조사
36. 가격표시 대상업소 증명 발급	36. 상거래질서 지도감독
37. 소비자 보호	37. 가격표시 대상업소 증명 발급
<신 설>	38. 소비자 보호
<신 설>	39. 대부업에 관한 사항
제15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세무1과)
1. 세입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및 현계	1. 세입총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목 적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현년도,과년도) 정리	3. <u>체납(현년도)</u>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과 소관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집행	12. 세외수입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16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세무2과) -----
1.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마권세의 부과·징수(현년도·과년도) 및 체납정리	1.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등록분), 레저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과내 현년도·과년도 체납총괄 및 포상금 집행	3. 지방세 과년도 체납정리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적과) 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지적과)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적도 재조제 업무	12. 지적 재조사 업무
13. ~ 28. (생략)	13. ~ 28.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그의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복지조사과장----- -----
제19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지역사회 복지계획 포함)	1. 복지종합계획 수립·조정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3. 복지욕구 조사
4.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 활동 사업 추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5. 전산망 구축 관리	5.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관리
6. 홍보 · 교육	6. 사회복지법인 관리
7.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구호, 응급구호비 지급 등)
8. 사회복지법인 관리	8. 무연고 사망자 행정 처리
9.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9. 구민휴양소 건립 및 운영
10.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	10. 사회복지직 관리 및 교육·워크숍 추진
11. 가족휴양소 건립	11. 복지재단 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직 관리 및 교육.워크숍 추진	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3. 복지수준 평가 기획	13.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1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4.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 체계 구축
15.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15. 복지위원 관리
16.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 체계 구축	16. 이웃돕기 후원 결연
17.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 및 통지	17. 긴급복지 지원
18. 복지위원 관리	18. 종합사회복지관.....

19. 이웃돕기 후원 결연	19. 민·관, 민·민 협의체 운영
20. 긴급복지 지원	20.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바우처 등)발굴 및 추진
21.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21. 용산 푸드뱅크(마켓) 관리
22. 민·관, 민·민 협의체 운영	22.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간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3.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바우처 등)발굴 및 추진	23. 적십자사 연계업무 추진
2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민간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4. 통합사례관리사업
25. 적십자사 연계업무 추진	25. 129콜센터 연계 상담
26.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등)	26. 방문복지 서비스 강화 활동사업 추진
27. 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27. 위기가정 발굴사업
28.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28. 자원봉사 계획 수립
29. 상담실 운영	29. 자원봉사 활동 개발·운영
30. 신규 책정 및 중지(기초수급자,모,부자가정,차상위 의료급여,경로연금대상자,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30. 자원봉사 단체 지원
31. 자원봉사 계획 수립	31. 자원봉사 센터 관리
32. 자원봉사 활동 개발·운영	32. 주민생활지원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0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사회복지과) -----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4의1. (생 략)	24의2. (현행 제24호의1과 같음)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제21조(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	7.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21.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24. 기타 위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업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운영매뉴얼(행정자치부)에 준한다.	24. 다문화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5.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6. 저출산대책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7. 기타 위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업무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업무운영매뉴얼(행정자치부)에 준한다.
제21조의2(고용정책과) 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 업무 총괄 4.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5.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6.·지역자활센터 관리 7.·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8. 생업자금 융자 9. 자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희망근로에 관한 사항 11. 공공근로 업무 추진 총괄 12.·노동(조합)업무에 관한 사항	<삭 제>

<p>13. 취업정보은행 운영 14.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한 사항 15. 고용촉진훈련 업무 및 고용관련 기관간 연계사업 16. 실업자대책에 관한 사항 17. 고용인력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p>	
<p><신 설></p>	<p>제21조의3(복지조사과) 복지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2.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3.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4.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5.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융자 6. 자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 8. 신규 신청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자산, 생활실태 조사 9. 신규 신청대상자 이의신청 처리 10. 신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조사대상 접수 확인 11. 신규 신청대상자 공적자료 요청 및 근로능력 판정 의뢰 12. 신규 신청대상자 조사결과 적합 여부 통보 13. 신규 복지조사 관련 자료 제작 등 14. 복지사업별 급여의 적정성 관리 15. 복지사업별 연간 확인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16.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관리 17.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관련조사 18. 복지대상자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관리 19. 복지대상자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관리 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후관리 및 지원
<p>제22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22조(문화체육과)</p>
<p>1.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p>	<p>1. <u>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2. <u>전통문화 발굴 및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u></p>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음반, 비디오,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 및 지도감독	3.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원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삭 제>
5. 출판사, 인쇄사 신고 및 지도감독	5. 출판사, 인쇄사, 정기간행물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보수, 유지 및 재산관리	6. 음반, 비디오물,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 등록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매매업소 신고	7. 관광시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 발굴 및 조사보급	8.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구단위 관광종합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신고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1.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1.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12. 기타 여가생활 관련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2. 문화, 종교,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
13. (생 략)	9.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체육관계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삭 제>
16. 생활체육교실운영등에 관한 사항	<삭 제>
17. 체육관련단체설립에 관한 사항	<삭 제>

18. 여가생활관련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19. (생 략)	10. (현행 제19호와 같음)
20. 지역정보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생 략)	13. (현행 제21호와 같음)
제23조(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3조(청소행정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변소개량 및 공중변소 유지관리	5.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쓰레기 봉투 배달 판매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9. ~ 18. (생 략)	9. ~ 18. (현행과 같음)
19. 청소장비 유류불출 관리	19.유류수불
20. ~ 32. (생 략)	20.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운영
제25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과장 및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도시개발과장·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도시관리국)맑은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재정비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제26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6조(주택과)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민간 및 재개발사업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관리 용 자금 회수	10. 주택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항
11.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소관지역의 증축(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	<삭 제>
14. 건축물 멸실부 처리	<삭 제>
15. 취약지역안의 건축신고	<삭 제>
16. 주택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물 관리	<삭 제>
<신 설>	17. 공공관리제도 운용의 수합관리에 관한 사항
17. (생 략)	18. (현행 제17호와 같음)
18. ~ 22. (생 략)	19. ~ 23. (현행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와 같음)
제27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제27조(도시계획과) -----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도시재개발사업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의 세부사업 운영	4. 도시환경정비사업 -----
5. 도시계획에 의한 재계획선의 건축선 명시	<삭 제>

6.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의 입안 및 지적고시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9. 도심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u>도시환경정비사업</u> -----
10. 도심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항	10. <u>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사항</u>
11. 도심재개발 구역내 공공용지 시설기준 및 설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u>도시환경정비사업</u> -----
12. 도심재개발 구역내 건축·전기·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12. <u>도시환경정비사업</u> -----
13. 도심재개발 구역내 사업계획(건축)에 관한 사항	13. <u>도시환경정비사업</u> -----
14. 도심재개발 구역내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등 위험시설물 관리	14. <u>도시환경정비사업</u> -----
15. ~ 17. (생 략)	15. ~ 17. (현행과 같음)
18. 관내 개발현장의 민원사항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리(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한남재정비촉진지구,용산국제업무지구)	18. ----- ----- <u>관리(도시환경정비사업,용산국제업무지구)</u>
<신 설>	19. <u>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u>
제27조의2(<u>도시개발과</u>) <u>도시개발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의2(<u>재정비사업과</u>) <u>재정비사업과</u> 장
1. <u>한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u>	1. <u>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u>
2. (생 략)	2. (<u>현행과 같음</u>)
3. <u>총괄 사업관리자 협약업무에 관한 사항</u>	3. <u>재정비촉진사업</u> -----

4.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설치·운영	4. 재정비촉진지구 건축행위, 철거멸실신고, 위반건축물 관리
5.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재정비촉진지구 위험 시설물관리
6.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관한 사항	6. -----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업무	7.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준공인가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입자 이주대책 및 임대주택 관련 업무	9.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유지관리,철거·멸실신고, 이행강제금부과	10. 도시 및 주거정비 기본계획 관련 사항(주택재개발)
11.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1.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건축행위, 철거멸실신고, 위반건축물 관리
12. 주거유형다양화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2.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위험 시설물 관리
13.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 및 공공관리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13.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5.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에 관한 사항	15.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사관계자 지도 감독 및 공사장 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16.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 행위제한 등 관련업무
17. 재정비촉진지구 내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7.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적용에 관한 사항	18. 개발사업 관련 갈등 사전 증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28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착공 및 사용검사 등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민영)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도시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수변, 특정관리, 야간조명등) 수립
<신 설>	15. 도시경관디자인 위원회 운영
<신 설>	16. 용산구 상징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관리
<신 설>	17.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추진 업무
<신 설>	18. 가로 경관 및 환경개선관련 사업 업무
<신 설>	19.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업무
<신 설>	20. 기타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수변, 특정관리, 야간조명등) 수립 2. 도시경관디자인 위원회 운영 3. 용산구 상징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관리 4. 디자인서울거리 사업 추진 업무 5. 가로 경관 및 환경개선관련 사업 업무 6. 공공시설물 디자인 관련업무 7.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9.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10. 옥외광고물 안전도 관련업무 11. 옥외광고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 12. 벽보·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업체 관리 13.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에 관한 업무 14.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업무 16. 기타 도시디자인 및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30조의2(환경과)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의2(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u>감염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u>	10. <u>의료폐기물</u> -----
11. ~ 24. (생 략)	11. ~ 24. (현행과 같음)
25. <u>정밀검사 기관 지정 및 등록,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u>	25. <u>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u> -----
26. <u>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u>	<삭 제>
27. <u>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수검사 검사명령에 관한 사항</u>	<삭 제>
28. <u>확인검사 대행자 등록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u>	<삭 제>
29.·30. (생 략)	29.·30. (현행과 같음)
31. <u>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안내,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u>	<삭 제>
32. ~ 36. (생 략)	32. ~ 36. (현행과 같음)
37. <u>연료수급조절·업무</u>	<u>37. 연료수급조절·업무</u>
38. <u>연료판매소·등록(신고)·및·지도감독</u>	<u>38. 연료판매소·등록(신고)·및·지도감독</u>
39. <u>연료의·품질관리·및·연료사용·위해방지</u>	<u>39. 연료의·품질관리·및·연료사용·위해방지</u>
40. <u>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지도(에너지·절약·추진)</u> ·	<u>40. 에너지의·합리적인·이용지도(에너지·절약·추진)</u>
41. <u>연료사용·실태조사</u>	<u>41. 연료사용·실태조사</u>

42. 연료·현대화·및·연료전환·지도	42. 연료·현대화·및·연료전환·지도
43. 가스안전관리업무·및·가스수급조절·업무	43. 가스안전관리업무·및·가스수급조절·업무
44. 가스제조·저장·판매업·허가·및·지도감독	44. 가스제조·저장·판매업·허가·및·지도감독
45. 가스사용시설·신고·및·지도감독	45. 가스사용시설·신고·및·지도감독
46. 도시가스보급·추진·업무	46. 도시가스보급·추진·업무
47. 가스용품·용기 관련·업무	47. 가스용품·용기- -----
48. (생략)	48. (현행과 같음)
49.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탄소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49. ----- 탄소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신설>	50. 특정관리대상시설 지도 감독
<신설>	51. 에너지효율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52. LED보급 및 에너지클리닉서비스에 관한 사항
<신설>	53.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안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관리과장·교통행정과장·교통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목과장 및 안전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안전건설교통국) ----- ----- 안전재난과장·건설관리과장·교통행정과장·주차관리과장----- ----- 치수과장----- -----.
<신설>	제31조의2(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한 검토·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및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 동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재난상황관리 및 대처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물자, 자원, 장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10. 재난 응급 조치 및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난 피해 원인 및 피해 상황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2.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난의 수습·복구·지원 및 개선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4.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6. 공공시설물, 지하도, 지하철등의 지하시설물, 궤도, 삭도및유회시설물,유선,도선업무안전지도
17.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18. 지역협력자생단체 지원(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의용소방대)
19. 안전문화운동(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취약계층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등)
20.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21. 안전정책 총괄·조정
22. 안전수준 진단·분석
23. 안전지수, 안전지도
24. 민방위·민방공계획의 총괄 수립시행
25. 전시민방위계획 수립
26. 민방위대의조직·편성·운영·동원및지도감독
27. 민방위 과태료 부과
28.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응급조치 명령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29. 민방위사태 피해처리
30.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p>31. 관내 직장민방위대장 지휘감독 및 대원명부작성관리 32. 민방위사태하의 주민의 통제 및 소산 수송통제 33. 민방위교육훈련 시행계획수립시행 및 연구발전 34. 민방위, 화생방 관련시설, 장비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35.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3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 등 수급계획수립·조정 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자원 및 예산총괄, 일제 조사에 관한 사항 37. 구 민방위협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8.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39. 등화 및 경보시설 통제 40.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1. 대피시설 계획 및 유지관리, 일제조사에 관한 사항 42. 사회복무요원 관리 43. 안전건설교통국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p>	
<p>제32조(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32조(건설관리과) -----</p>
<p>1. ~ 13. (생략)</p>	<p>1. ~ 13. (현행과 같음)</p>
<p>14. <u>건설교통국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p>	<p><삭제></p>
<p><신설></p>	<p>15. <u>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u></p>
<p><신설></p>	<p>16. <u>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u></p>
<p><신설></p>	<p>17. <u>옥외광고물 안전도 관련업무</u></p>
<p><신설></p>	<p>18. <u>옥외광고업자 등록 및 관리 업무</u></p>
<p><신설></p>	<p>19. <u>벽보·현수막 게시대 및 관리업체 관리</u></p>

<신 설>	20. 광고물 도로공간 점용에 관한 업무
<신 설>	21.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업무
<신 설>	22.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33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교통행정과)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28.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삭 제>
29.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자료 조사	<삭 제>
30. ~ 32. (생 략)	30.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3. (생 략)	34. (현행 제33호와 같음)
34. ~ 41. (생 략)	35. ~ 42. (현행 제34호부터 제41호까지와 같음)
42. (생 략)	44. (현행 제42호와 같음)
43. 운수업체 정비시설관리	<삭 제>
44. ~ 49. (생 략)	45. ~ 50. (현행 제44호부터 제49호까지와 같음)
<신 설>	51. 노상 방치차량 조사
<신 설>	52. 장기 미반환 차량관리

<신 설>	53. 택시운전자격정지 및 해제
<신 설>	54.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55.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신 설>	56. 유상운송허가
<신 설>	57. 알선운송업체 지도단속
<신 설>	58. 교통불편 신고민원처리
<신 설>	59.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신 설>	60.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신 설>	61. 운수과징금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2. 체납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 설>	63. 각종 고지서 송달
제34조(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민영주차장 설치통보 및 감독	4.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5. 건물부설주차장 유료화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노상 방치차량 조사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장기 미반환 차량관리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택시운전자격정지 및 해제	<삭 제>
15.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삭 제>
17. 유상운송허가	<삭 제>
18. 알선운송업체 지도단속	<삭 제>
19. 교통불편 신고민원처리	<삭 제>
20. 버스전용차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삭 제>
21. 교통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삭 제>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24.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삭 제>
25. 체납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삭 제>
26. 각종 고지서 송달	<삭 제>

27. 주정차위반 과태료·운수과징금 이의신청처리	27. ----- 과태료----- -----
<신 설>	28.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
<신 설>	29.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자료 조사
제36조(안전치수과) 안전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6조(치수과) 치수과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유수지 배기시설 관리	8. -----기전시설 -----
9. ~ 15. (생 략)	9. ~ 15. (현행과 같음)
16. 하수도사용료 재심청구 심의	<삭 제>
17. 하수도 사용조례 위반자 조치	<삭 제>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19.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재난예방 및 피해절감을 위한 검토·협의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재난관련 위원회 운영 및 각종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2.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3.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삭 제>

24.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25.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26. 재난상황관리 및 대처에 관한 사항	<삭 제>
27.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 동원계획 수립운영	<삭 제>
28. 재난응급 조치 및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29. 재난피해원인 및 피해상황조사·분석에 관한사항	<삭 제>
30.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31. 재난의 수습·복구·지원 및 개선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삭 제>
32.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	<삭 제>
33. 재난상황 대응계획 및 재난 표준대응방법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삭 제>
34. 공공시설물, 지하도, 지하철등의 지하시설물, 폐도, 삭도및유희시설물,유선,도선업무안전지도	<삭 제>
35.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지도	<삭 제>
36. 지역협력자생단체 지원(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베타 트남참전전우회, 의용소방대)	<삭 제>
37. 안전문화운동(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민안전봉사대 운영, 취약계층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등)	<삭 제>
38.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삭 제>
39. 안전정책 총괄·조정	<삭 제>

40. 안전수준 진단·분석	<삭 제>
41. 안전지수, 안전지도	<삭 제>
제39조(하부조직) ①보건소장 밑에 보건위생과, <u>보건지도과</u> , <u>의약과</u> 를 둔다.	제39조(하부조직) ① ----- ----- <u>건강증진과</u> -----.
②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보건지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 <u>건강증진과장</u> -----.
③진료과목은 1차진료과, 모자보건과, 구강보건과, 전염병예방과, 결핵진료과, 한방진료과를 두고, 각 과의과장(科長)에는 의사인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둔다.	③ ----- ----- <u>감염병예방과</u> ----- ----- 과의 과장(科長)에는 의사인 지방일반임기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④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진료비 및 의료수가 조정 및 징수	6. 보건소 이용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7. ~ 19. (생 략)	7.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보건소내 다른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 설>	21.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신 설>	22. 동물 보호관리(유해조수 제외)
<신 설>	23.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

20. (생 략)	24. (현행 제20호와 같음)
⑤보건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건강증진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모자보건사업 운영(출산준비, 베이비마사지 교실 등)	4. ----- ----- 교실,모유수유클리닉 ----
5. 의료비 지원(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불임부부)	5.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난임부부,청소 년 산모 등)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18. 전염병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18. 감염병예방법 -----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급성 전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0. ----- 감염병관리 -----
21. 전염병 역학조사	21. 감염병 -----
22. 신종전염병 대응관리	22. 신종감염병 -----
23. ~ 28. (생 략)	23. ~ 28. (현행과 같음)
29. 진료과목 운영[모자보건과, 전염병예방과(결핵등)]	29. -----염병예방과(결핵등)]
⑥의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진료과목(1차진료과,구강보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진료과목(1차진료과,구강보건과,한방진료과) ----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17. 주민의 영양상태 조사연구	<삭 제>
18. ~ 21. (생 략)	18. ~ 21. (현행과 같음)
제41조(사무관장) 동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41조(사무관장)
<p>1. 서무에 관한 사항</p> <p>가. 문서의 접제41조(사무관장) 동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무에 관한 사항 가. 문서의 접수·발송·문서관리(보존,확인), 비밀문서 수발, 보관관리, 공인관리 나. 당직 및 비상근무, 청사 시설물 관리, 동 특수시책 추진, 법령집 관리 2. 구정에 관한 사항 가. 통·반장 위·해촉, 통·반 위치 및 구역조정 건의, 통·반장 수당 지급 나. 통·반장회의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반상회 운영 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민상 등 주민상훈 추천 라. 동정보고회, 동민의 날 행사 마.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바. 적십자회비 모금 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가. 예산편성의 요구,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예산 및 자금 배정요구 나. 일상경비 출납,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일상경비 집행 결산 4. 인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소속직원의 보직인사, 근무성적평정, 복무관리, 상훈대상 추천 나. 행정감사자료 작성, 감사 지적사항 처리 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동장소관) 5. 세무에 관한 사항 가.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나.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분), 수입증지 수불 및 판매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관리, 청사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 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나. 주민등록(정정·말소 등) 신고, 이의신청 다. 주민등록증(제)발급 신청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전입신고 수리, 국외이주신고 수리 마. 주민등록 직권조치,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바. 회수·습득·서손 주민등록증 처리 사. 전출·정정·말소사항 통보, 과태료 부과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 주민등록 전산대상, 인구이동 보고,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자. 주민등록 번호부여, 본적지·주민등록지 통보사항 정리, 분실신고서</p>	<p>1.</p>

접수사항 통보 차. 신고에 의한 말소 카. 전입신고사항 사
 후관리 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 출생·사망 신
 고 수리 나.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고지, 신고서류의
 본적지 송부, 사건표의 보고 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 증명서 발급 9. 인감에 관한 사항 가. 인감(변경·개
 인)신고수리, 인감증명 발급, 인감 직권취소 및 부활 나.
 인감대상자 거주지 이동신고 및 송부, 인감대장 비치관리
 10. 민원 및 학부에 관한 사항 가. 확정일자 증명,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적용, 학령아동 전·출입신고 수리 나. 행
 정정보 공개,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취학대상 통보 및 취
 학통지서 배부 다. 어디서나민원 처리, 우편민원 처리, 재
 택전자민원 신청접수 11.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
 대 편입지원 신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나. 민방위 교
 육훈련유예 면제 신청, 민방위대 동원유예 신청 다. 현지
 교육훈련 신청, 방위대원 거주지 이동신고 수리 라. 동방
 위협의회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마. 민방위 비상소집 훈
 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바. 민방위 경보망 유지관
 리, 민방위대 편성 사. 민방위대 심사제외, 민방위대 동원
 아. 민방위 교육훈련, 통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자. 교육훈
 련 통지 12. 인력동원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나. 비상대비 훈련통지 보고, 자격면허 관리,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비치
 다.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라.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
 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
 나. 수급자 자격관리(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다. 확인조사(소득변경, 금융조회, 근로능력 재판정 등)
 라. 복지급여(생계, 주거)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마. 정부양곡 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
 바. 교육급여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지급자료 생성
 사. 단전.단수가구 등 취약계층 일제조사
 아. 부정수급자 조사 및 보장비용 징수
 14.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신규 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다. 변동사항 관리(전출입, 사망 등)
 라. 양곡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마. 임대료 보조신청 접수
 15.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가. 기수급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선별 보고(근로능력 판별)
 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다. 자활근로 임금 및 자활장려금 지급자료 생성
 16.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나.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접수
 17.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 저소득 경로연금 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자격관리(전출입, 사망 등), 확인조사
 다. 경로연금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라. 노인교통수당 신청자 관리(인내문 발송, 전출입, 사망 등) 및 변동사항 관리
 마. 교통수당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
 바.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사. 장수수당 신청 접수 및 지급
 아.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자. 결식노인 실태조사
 차.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및 판정
 카. 노인 지역봉사 관리 및 활동비 지급
 18.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접수, 진단의뢰
 나. 등록 장애인 관리(관리카드, 전출입, 사망 등 변동 사항)
 다.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
 라. 장애인 복지카드, 보호자카드 접수 및 교부
 마.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접수 및 교부
 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사. 장애인 엘리베이터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아. 장애인 관련 각종 수당 지급자료 생성
 자. 장애인 자녀 학비신청 접수 및 자료 생성
 차.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전세자금 융자신청 접수
 19.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변동 확인
 나. 아동급식 수요조사
 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접수 및 증 교부
 20. 모.부자복지에 관한 사항
 가. 모.부자가정 신규 신청자 초기 상담
 나. 모.부자 가정 일제조사
 다. 모.부자가정 변동사항 관리(전출입, 사망, 중지처리 등)
 라. 모.부자가정 자녀양육비 및 자녀학비 지급자료 생성.확정
 21.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가. 보육료 감면대상자 일제조사
 나. 신규 보육료 감면 신청자 조사
 다. 유치원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22. 기타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접수
 나. 구인·구직 신청 접수, 고용촉진훈련 신청 접수
 다.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융자신청 접수
 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23. 청소에 관한 사항
 가. 클린자원봉사대 운영
 나.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라. 저소득 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24. 농지에 관한 사항
 가. 농지원부 등본 열람·교부, 농지원부 작성 비치, 거주지 이전 농지원부 송부
 2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접수

<p>나. 승용차요일제 신청 처리</p> <p>26. 건설행정 및 수도에 관한 사항</p> <p>가. 가구분할 적용신고</p> <p>27. 한시적 추진 사무(관계법령 개정시까지)</p> <p>가. 선거공보 발송, 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p> <p>나. 문화재 발견신고 수리</p> <p>28. 기타 동장 자율추진 사무(임의사무)</p> <p>가. 국경일 국기계양 계도, 동정보고회, 자율방범대 운영</p> <p>나. 차량유지관리, 구 체육대회 출전, 국민운동단체 관리, 동 체육회 운영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새마을협의회 운영</p> <p>라. 체육행사 개최, 경로위안 행사, 노인 위생비 지급, 부녀자원봉사회 운영</p> <p>마. 양수기 보관관리, 재해·재난상황실 운영</p>	
<p><신 설></p>	<p>가. 문서의 접수·발송·문서관리(보존,확인), 비밀문서 수발, 보관관리, 공인관리</p>
<p><신 설></p>	<p>나. 당직 및 비상근무, 청사 시설물 관리, 동 특수시책 추진, 법령집 관리</p>
<p><신 설></p>	<p>2. 구정에 관한 사항</p> <p>가. 통·반장 위·해촉, 통·반 위치 및 구역조정 건의, 통·반장 수당지급</p> <p>나. 통·반장회의 운영,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반상회 운영</p> <p>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민상 등 주민상훈 추천</p> <p>라. 동정보고회, 동민의 날 행사</p> <p>마.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p> <p>바. 적십자회비 모금</p>
<p><신 설></p>	<p>3.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p> <p>가. 예산 및 자금 배정요구</p> <p>나. 일상경비 출납,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일상경비 집행 결산</p>

<p><신 설></p>	<p>4. 인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가. 소속직원의 보직인사, 근무성적평정, 복무관리, 상훈대상 추천 나. 행정감사자료 작성, 감사 지적사항 처리 다.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동장소관)</p>
<p><신 설></p>	<p>5. 세무에 관한 사항 가.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나.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동분)</p>
<p><신 설></p>	<p>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가. 물품관리, 청사 유지관리, 차량 유지관리</p>
<p><신 설></p>	<p>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 나. 주민등록(정정·말소 등) 신고, 이의신청 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교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전입신고 수리, 국외이주신고 수리 마. 주민등록 직권조치,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바. 회수·습득 주민등록증 처리 사. 정정사항 통보, 과태료 부과고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아.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자. 주민등록 번호부여, 등록기준지·주민등록지 통보 사항 정리, 분실신고서 접수사항 통보 차. 신고에 의한 말소 카. 전입신고사항 사후관리</p>
<p><신 설></p>	<p>8.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 출생·사망 신고 수리 나.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고지, 신고서류의 구청 송부 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각종 증명서 발급</p>
<p><신 설></p>	<p>9.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가. 인감(변경·개인) 신고수리,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인감 직권취소 및 부활 나. 거주지 이동신고자에 대한 인감대장 송부, 인감대장 비치관리</p>

<p><신 설></p>	<p>10. 민원 및 학무에 관한 사항 가. 확정일자 증명, 수가구 거주 전기요금 적용 나. 행정정보 공개,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다. 어디서나민원 처리, 우편민원 처리, 재택전자민원 신청접수</p>
<p><신 설></p>	<p>11. 민방위에 관한 사항 가.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나. 민방위 교육훈련유예 면제 신청, 민방위대 동원유 예 신청 다. 현지교육훈련 신청, 방위대원 거주지 이동신고 수리 라. 동방위협의회 운영, 민방위의 날 훈련 마.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바. 민방위 경보망 유지관리, 민방위대 편성 사. 민방위대 심사제외, 민방위대 동원 아. 민방위 교육훈련, 통 민방위대장 지휘감독 자. 교육훈련 통지</p>
<p><신 설></p>	<p>12. 인력동원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 이동, 인력자원 조사 및 보고 나. 비상대비 훈련통지 보고, 자격면허 관리, 인력자 원 연명부 작성비치 다.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라. 재해 이재민 발생 보고</p>
<p><신 설></p>	<p>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지원에 관한 사항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 접수 나. 정부양곡 지급신청자 접수 및 관리 다. 복지대상자 방문복지 및 모니터링 실시 라.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상담 및 중점관리 의뢰 마.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 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봉사활동 지원 사. 위기가정 및 복지사가지대 일제조사</p>
<p><신 설></p>	<p>14.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나. 자산형성사업 신규신청 접수 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라. 생업자금 융자 신청 접수</p>

<p><신 설></p>	<p>15.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가.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 접수 나. 의료급여증 재신청 및 배부</p>
<p><신 설></p>	<p>16.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신청 조기상담 및 접수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재가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 및 접수 라.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및 참여자 관리 마. 시니어패스카드 발급 및 관리</p>
<p><신 설></p>	<p>17.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가. 장애인등록 상담 및 접수, 위탁심사의뢰 나. 등록 장애인 관리(관리카드, 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 다. 장애인 재진단 및 등급조정 처리 라. 장애인 복지카드 접수 및 교부 마.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접수 및 교부 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사. 장애인 엘피지 부정사용자 실태조사 아. 장애인 관련 각종 연금, 수당 초기상담 및 접수 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사업 신청 접수 차. 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카.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전세자금 융자신청 접수 타. 장애인바우처사업, 활동지원사업 신청 접수</p>
<p><신 설></p>	<p>18. 아동 및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가.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변동 확인 나. 아동급식 수요조사 및 대상자 관리 다. 청소년증 발급 신청접수 및 증 교부 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마.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신청 접수 바.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사. 다문화 방문교육서비스 신청 접수 아.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신청</p>
<p><신 설></p>	<p>19.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가.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자 초기상담 및 접수 나.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신청 접수</p>

<신 설>	20. 기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21.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가.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신청 접수 나. 저소득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다. 집수리 신청 접수
<신 설>	22. 청소에 관한 사항 가. 클린자원봉사대 운영 나.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라. 저소득 가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신 설>	23. 농지에 관한 사항 가. 농지원부 등본 열람·교부, 농지원부 작성 비치, 거주지 이전 농지원부 송부
<신 설>	24.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 접수 나. 승용차요일제 신청 처리
<신 설>	25. 건설행정 및 수도에 관한 사항 가. 가구분할 적용신고
<신 설>	26. 한시적 추진 사무(관계법령 개정시까지) 가. 선거공보 발송, 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지원 본부 운영
<신 설>	27. 기타 동장 자율추진 사무(임의사무) 가. 국경일 국기계양 계도, 동정보고회, 자율방법대 운영 나. 구 체육대회 출전, 국민운동단체 관리, 동 체육 회 운영 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새마을협의회 운영, 한 국자유총연맹 운영 라. 체육행사 개최, 경로위안 행사, 부녀자원봉사회 운영 마. 양수기 보관관리, 재해·재난상황실 운영